

ESRS-40a 공개초안 주요내용

검토보고서

한국회계기준원
지속가능성기준실

2026. 9. 2.

< 목 차 >

I. ESRS-40a 공개초안 개요	3
II. EFRAG 설문지 내용 요약	6
III. ESRS-40a 기준서별 주요 내용	11

붙임 1. ESRS(2026년) 대비 제거된 주요 공시 요구사항

I ESRS-40a 공개초안 개요

1. CSRD상 비EU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 제도

□ (도입 배경) 유럽 집행위원회(이하, EC)는 '22.12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(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, 이하, CSRD)을 채택·공표('23.1월 발효)하여 EU 역내에서 유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비EU 기업에 대해 비EU 최종모회사 그룹 차원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요구

- (도입 목적) EU 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간 ❶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, ❷비EU 기업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임팩트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

□ (의무 구조) 보고서의 작성 단위와 법적 의무공시 주체가 구분됨

구분	내용
보고 단위	비EU 최종모회사 그룹 차원. 다만, 그룹에 속하지 않는 비EU 기업은 개별기업 차원
공시 의무	보고서의 공시 및 공개 의무(publish and make accessible)는 비EU 기업의 EU 내 종속기업 또는 지점에 부과
정보 미제공 시	비EU 최종모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EU 내 종속기업 또는 지점은 확보한 정보로 보고서를 작성·공개하고,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

□ (적용기준) CSRD에 따라 EC가 위임법률로 채택할 ESRS-40a*를 적용할 예정이며, 현재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(EFRAG) 공개초안 단계임

* 초기에는 비EU ESRS(Non-EU ESRS) 및 제3국 기업 대상 ESRS(ESRS-TC)로 지칭된 바 있음

□ (적용시기) '28.1.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('29년 최초 보고서 제출)

□ (적용대상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1. EU 규제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EU 기업
2.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EU 내 순매출이 4.5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
3.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- ①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이 2억 유로를 초과하는 EU 내 종속기업을 보유
 - ② EU 내 지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이 2억 유로를 초과

- 단, 위 요건은 ERS-40a의 보고대상이 되는 비EU 기업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, 실제 보고서의 공시(제출) 의무는 해당 비EU 기업의 EU 내 종속 기업 또는 지점에 부과됨

2. ERS-40a 공개초안 발표 및 주요 내용

- (공개초안 발표) EFRAG는 '26.7.23일 ERS-40a 공개초안(이하, ERS-40a ED)을 발표하고, 100일 간 의견조회를 실시함(의견조회기간: '26.7.23일~10.31 일)
- (기준서 구성) 개정 ERS와 동일하게 2개의 공통기준과 10개의 주제별 기준 등 총 12개 기준으로 구성

기준서 분류		기준서명
ERS-40a 1		일반 요구사항
ERS-40a 2		일반 공시
환경	ERS-40a E1	기후변화
	ERS-40a E2	오염
	ERS-40a E3	수자원
	ERS-40a E4	생물다양성 및 생태계
	ERS-40a E5	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
사회	ERS-40a S1	자체 사업장 근로자
	ERS-40a S2	가치사슬 내 근로자
	ERS-40a S3	영향받는 지역사회
	ERS-40a S4	소비자 및 최종사용자
거버넌스	ERS-40a G1	사업행위

- (제정 접근법) '26.7월 EC가 채택한 개정 ERS를 시작점으로 하되, CSRD 제40a조의 위임 범위에 맞게 다음과 같이 조정

	ERS-40a	개정 ERS
중요성 원칙	임팩트 중요성	이중 중요성
공시 범위	글로벌 또는 혼합 접근법	글로벌(단일)

- (임팩트 중요성 중심) 임팩트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, 기회, 회복력, 의존성 및 재무적 영향 관련 요구사항을 삭제·조정*

* 단, 임팩트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맥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적 정보(financial information)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함

- (공시 범위 선택권 제공: 혼합 접근법) 기후변화는 글로벌 범위로 보고하되, 그 밖의 주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U 관련 임팩트로 공시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혼합 접근법 도입

구분	설명
글로벌 접근법	모든 주제에 대해 글로벌 기준으로 임팩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함
혼합 접근법	기후변화 외 주제에 대해 'EU 관련 임팩트(EU-related Impacts)'에 대한 정보만을 보고함. EU 관련 임팩트에는 다음 두 가지 범주의 임팩트가 포함됨 • 고객 기반 임팩트: EU 시장에 판매·제공된(또는 예상되는) 제품·서비스로 인한 임팩트 • 위치 기반 임팩트: EU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임팩트

- (상호운용성) 제3국에서 적용되는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의 정보를 ESRS-40a 보고서에 '참조를 통해 포함'(incorporation by reference)할 수 있도록 허용*

* ESRS-40a가 요구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제3국 지속가능성 보고기준(예: KSSB 기준)으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나, 참조 시에는 목차(쪽수·단락 번호) 제공이 요구됨

3. 핵심 의견조치 사항

- EFRAG는 설문지를 통해 ESRS-40a ED와 개정 ESRS 간 차이를 중심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(상세 내용 'II. EFRAG 설문지 요약' 참조)
 - (임팩트 중요성 중심) ESRS-40a ED에서 위험, 기회, 회복력, 의존성 및 재무적 영향 관련 요구사항을 삭제·조정한 방식과, 임팩트를 이해하기 위한 일부 재무정보를 유지한 접근법의 적절성
 - (혼합 접근법) 혼합 접근법의 주제·요구사항별 적용가능성, 글로벌 접근법 의무 적용 주제(현재: 기후변화) 확대 필요성 등
 - (상호운용성) '참조를 통한 포함' 요구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 등
 - (EU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참조) EU 법률(예: REACH 법) 내 용어 및 개념을 직접적으로 참조하고 있는 지표의 EU 역외 적용가능성 등

II EFRAG 설문지 내용 요약

※ EFRAG 설문지에서 ESRS-40a 및 결론도출근거 내 문단 참조 시 오류가 존재함.
본 문서에 포함된 문단은 ESRS-40a 기준서 및 결론도출근거의 실제 문단에 기반함

□ (구성) 총 4개 섹션에 걸쳐 82개 문항으로 구성됨

- ❶ (Profile of the respondent) 응답자의 유형, 상세 정보 등 20개 문항
- ❷ (High-level feedback) ①개정 ESRS를 기반으로 위험 및 기회 관련 데이터 포인트를 제거하는 제정 접근법과 ②혼합 접근법 적용 관련 세부 질의 등 18개 문항
- ❸ (Detailed feedback) 5개 사항*에 세부적인 피드백 총 44개 문항 (선택 응답 항목)
 - * (1) 개정 ESRS를 기반으로 위험 및 기회 관련 데이터 포인트를 제거하는 ESRS-40a 제정 접근법, (2) 혼합 접근법 적용, (3) 상호운용성, (4) EU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참조 및 적용가능성, (5) 기타
- ❹ (Feedback at the level of DR) 개별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개선 제안사항 (선택 응답 항목)

가. Profile of the respondent

- (공통 문항) 응답자에 대한 기초 정보(성명, 소속, 국가, 이메일) 및 유형(작성자, 이용자, 금융기관, 기타 중 선택)(Q1~Q7)
- (작성자 맞춤 문항) 응답자가 ‘작성자’인 경우, 아래의 별도 문항(Q8~20)에 대한 답변이 요구됨존재함

○ 응답 기업이 다음 중 어떠한 분류에 해당하는지(Q8)

응답 기업 분류		CSRD 제19a조 또는 제29a조 적용대상	CSRD 제40a조 적용대상
1	유럽 소재 자회사	모두 해당됨	
2	유럽 소재 자회사·지점	해당되지 않음	해당됨
3	제3국 소재 모그룹 (유럽 소재 회사·지점 보유)		√
4	유럽 소재 모회사·그룹	해당됨	
5	유럽 소재 모회사·그룹	해당되지 않음	

- 작성자가 CSRD 제40a조 적용을 받는 제3국 소재 모그룹(즉, 3번)에 해당하는 경우, 다음의 추가 정보(Q12~16)

-
- (Q12) CSRD 제19a조 또는 제29a조 적용을 받는 유럽 자회사 수
 - (Q13) CSRD 제19a조 또는 제29a조 적용을 받는 유럽 자회사 소재지
 - (Q14) CSRD 제19a조 또는 제29a조에 따라 既 ESRS 보고 중인 유럽 자회사 목록
 - (Q15) 전체 그룹 차원의 ESRS 보고 계획 보유 여부 ('예' / '고려중' / '아니오' 중 선택)
 - (Q16) 전체 그룹 차원의 ESRS 보고 계획 사유
-

- 응답자 또는 응답자의 최종 모기업이 그룹 차원에서 ISSB 기준에 기반한 자국 기준에 따라 연결 공시를 하는지 또는 계획(FY2028까지)이 있는지(Q17)

- 만약 그렇다면, 기후 외 주제 포함 여부(Q18)

- 응답자 또는 응답자의 최종 모기업이 그룹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연결 공시를 하는지 또는 계획(FY2028까지)이 있는지(Q19)

- 만약 그렇다면, 기후 외 주제 포함 여부 및 준거 기준(ISSB 기준, GRI 기준 또는 기타 기준)(Q20)

나. High-level feedback

① ESRS-40a 제정 접근법(Q21~Q24)

- 개정 ESRS를 시작점으로 위험, 기회, 회복력 및 의존성(RORD)과 재무적 영향 관련 데이터 포인트를 제거하되(제거된 주요 공시 요구사항 붙임 1 참조), 기업의 임팩트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재무 정보를 유지하는 접근법에 대한 동의 여부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유지되어야 하는 데이터 포인트 존재 여부에 대한 추가 문항이 존재하며, 존재 시 데이터 포인트 목록(엑셀 양식) 내 별도 표기가 요청됨
- 개정 ESRS 대비 추가 또는 수정된 문단에 대한 의견 존재 여부
 - 의견 존재 시, 데이터 포인트 목록(엑셀 양식) 내 별도 표기가 요청됨

② 혼합 접근법의 적용(Q25~Q38)

- 혼합 접근법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의견별 사유(선택형 및 서술형)
- EU 관련 임팩트의 정의를 원칙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

- 응답자가 작성자인 경우, 다음의 추가 정보 제공이 요청됨

- (Q33) 혼합 접근법 적용 계획 (여/부)
- (Q34) 혼합 접근법을 적용할 주제/하위주제 또는 임팩트 조합
- (Q35) 적용 방법

- 응답자가 이용자인 경우, 보고 범위가 상이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이해 및 비교가 가능한지(불가능할 경우 대안 포함)를 질의하는 별도 문항(Q36-38)이 존재함

다. Detailed feedback

① ESRS-40a 제정 접근법(Q39~Q40)

○ 기준서의 초점을 임팩트 정보로 제한하여도 ‘공정한 표시’ 달성 가능 여부 및 사유

[참고] 공정한 표시 관련 EFRAG 논의사항 (결론도출근거 문단 BC88~BC91)

- EFRAG는 위험 및 기회에만 초점을 맞춘 ISSB 기준에도 ‘공정한 표시’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음과 유사하게, 임팩트에만 초점을 맞춘 기준서에도 해당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함
- ‘공정한 표시’는 정보의 완전성, 중립성 및 정확성과 연계된 광범위한 질적 목표로, 기회 및 위험으로 적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함
- 다음 3가지 조건 충족 시, ‘공정한 표시’가 임팩트 중심 보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함
 - ③ 기초가 되는 정성적 특성이 적절히 설명되고 적용됨
 - ④ 기업특유 정보가 표준화된 공시를 보완함
 - ⑤ 정보의 중요성 원칙이 적용됨

② 혼합 접근법(Q41~Q65)

○ 다음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사유 설명

- (Q41) 인권 관련 임팩트 정보 공시에 대한 혼합 접근법 적용
- (Q43) 임팩트가 지리적으로 국한될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혼합 접근법 적용
- (Q45) 혼합 접근법 적용 시 ‘공정한 표시’ 달성 가능성
- (Q47) 주제, 하위주제 또는 임팩트 조합 수준으로 보고의 범위 제한*

* (Q49) 작성자이며 동의한 경우, 동 주제 내 하위주제 또는 임팩트 조합에 대해 글로벌 접근법과 혼합 접근법을 혼용할 예정인지에 대한 별도 질의 포함됨

- (Q51) 작성자 및 인증인 입장에서 혼합 접근법 적용 시 이행 어려움*이 예상되는지

* 17개 항목 중 복수선택

- (Q55) 혼합 접근법이 적용된 경우의 공시 요구사항(EU 관련 임팩트 판단 방법 등)이 혼합 접근법의 적용 방법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지
- (Q57) ESRS-40a 2가 EU 관련 임팩트를 공시하는 데 충분히 구체적인 가이드언스를 제공하는지
- (Q60) ESRS-40a 주제별 기준이 EU 관련 임팩트를 공시하는 데 충분히 구체적인 가이드언스를 제공하는지
- (Q63) 혼합 접근법을 적용한 자체 인력 관련 양적 지표 공시 시, 자체 인력을 EU내와 EU외로 세분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의 유용성*
- * (Q64) 유용성에 동의 시, 모든 양적 지표(S1-6~S1-16)에 대해 세분화 공시 요구사항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별도 질의 포함됨

③ 상호운용성(Q66~Q77)

- ESRS-40a 공개초안 내 정보의 **표시(presentation) 관련 요구사항**과 ‘**참조를 통한 포함(incorporation by reference)**’ **요구사항***에 대한 동의 여부
 - * ESRS-40a가 요구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‘참조’를 통한 포함(Incorporation by reference)이 가능하나, 제3국 지속가능성 보고기준(예: KSSB 기준)으로 작성된 보고서에서 참조 시에는 목차(쪽수·단락 번호) 제공 요구됨
- ‘참조를 통한 포함’에 대한 ESRS-40a 요구사항만으로 **이해가능하고 검증가능한** 보고가 가능한지 질의하는 별도 문항이 존재함
- ESRS-40a와 자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**동시에 적용**해야 하는 작성자 입장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**가능성 판단**

- ‘참조를 통한 포함’을 통해 중복 보고를 피할 수 있음
-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일의 보고서를 작성함
- 중복 보고를 피할 수 없어 두 개의 단독적인 보고서를 작성함

④ EU 법 및 규정에 대한 참조와 적용가능성(Q78~Q81)

- EU 법률 내 **용어 및 개념**에 대한 참조의 **적용가능성**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, 데이터 포인트 목록(엑셀 양식)에 수정이 필요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별도 표기가 요청됨
- EU 법률 내 용어 및 개념을 EU 외 범위에 적용할 때 추정·근사가 사용된 경우의 공시 요구사항(적용범위, 한계 등)의 적절성

- 구체적으로, 이러한 요구사항만으로 EU에서 유래한 개념과 제3국 개념 간의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보장하기에 명확하고, 적용 가능하며, 충분한지

⑤ 기타(Q82)

- 질의서에 포함된 문항 外 내용에 대한 의견 또는 제안사항

라. Feedback at the level of DR

- ‘ESRS-40a 제정 접근법’ 관련 문항 중 제거된 데이터 포인트의 복원 필요성과 개정 ESRS 대비 제거·수정·신설된 문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,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목록(list)이 나열된 별도 파일*(엑셀 양식)에 의견을 기입하여 업로드

* 온라인 설문지 내 링크 통해 다운로드 가능

- 개정 ESRS 대비 변경사항이 없는 문단에 대한 의견 제출은 불가함

Ⅲ ESRs-40a 기준서별 주요 내용

1 ESRs-40a 1 일반 요구사항

가. 목적

- (목적) ESRs-40a는 CSRD 제40a조의 적용을 받는, **최종모기업**이 EU가 아닌 제3국(이하, 비EU)에 위치한 **EU 소재 자회사 또는 지점**이 최종모기업 또는 그룹의 **중요한 임팩트**를 보고할 때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규정함
 - ESRs-40a 지속가능성 보고서(이하, ESRs-40a 보고서)는 비EU 최종모기업 또는 그룹의 **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임팩트**와 그 관리 방식을 공정하게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기업은 중요한 임팩트에 대한 ①거버넌스, ②전략, ③임팩트 관리, ④지표 및 목표에 관한 정보를 **주제별로** 공시할 것이 요구됨
 - ESRs-40a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**보고 방식**을 규정하는 기준으로, 별도의 조치를 의무화하거나 EU 법률상 **실사의무** 등을 대체하지 **않음**
 - ESRs-40a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**비EU 최종모기업 수준**에서 작성되어야 하며, EU 소재 자회사 또는 지점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**비EU 최종모기업에게 정보를 요청**할 것이 요구됨
 - 비EU 최종모기업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명시하고, **가용한 모든 정보**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
 - 또한, ESRs-40a 보고서에는 **인증 의견**이 수반되어야 하며,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EU 소재 자회사 또는 지점은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함
 - 만약 비EU 최종모기업이 **ESRS 및 ESRS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준**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CSRD에서 규정하는 **인증 및 접근성** 요건을 충족한 경우, EU 소재 자회사 또는 지점의 **ESRS-40a 보고서 제출은 면제**됨

나. ESRs-40a 기준서 및 작성규범

- ① (ESRS-40a 기준서 및 기업특유 공시) ESRs-40a는 ESRs-40a 1 일반 요구사항, ESRs-40a 2 일반 공시사항, 환경·사회·거버넌스에 관한 주제별 기준서로 구성됨

- **(ESRS-40a 1)** 중요한 임팩트 식별, 보고정보의 작성 및 표시에 필요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규정함
- **(ESRS-40a 2)** 모든 중요한 주제에 **공통적으로** 적용되는 일반 공시사항을 규정함
- **(주제별 ESRS-40a)** 각 지속가능성 주제 및 하위주제(sub-topics)에 관한 구체적 공시사항을 규정함
 - 기업이 식별한 중요한 임팩트가 ESRS-40a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,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**기업특유 공시(entity-specific disclosure)**가 추가로 요구되며,
 - 기업특유 공시 작성 시 **IFRS 산업기반 지침, GRI 기준 등 외부 프레임워크 및 기준서를** 활용할 수 있음

② (작성규범) ESRS-40a에서 사용되는 용어, 요구사항의 구성 등을 설명함

- ❶ **(임팩트)** 사람과 환경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, 긍정적 및 부정적 임팩트를 의미하며,
 - 중요한 임팩트(material impacts)는 CSRD에서 사용되는 주요 임팩트(principal impacts)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됨
- ❷ **(요구사항 구성)** 공시사항은 공시 요구사항(DR, Disclosure Requirements)과 개별 데이터 포인트(DP)로 구성됨
 - 적용 요구사항(AR, Application Requirements)은 본문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공시 작성에 고려해야 할 방법론 및 요소 또는 가능한 표시 방식을 규정함

③ (보고 범위) 기후변화 外 주제에 적용되는 **혼합 접근법**을 도입함

- **(원칙)** ESRS-40a 보고서의 보고기업은 **비EU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보고기업과 동일**
- **(예외: 혼합 접근법)** 기후변화를 제외한 주제*와 관련된 임팩트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보고정보를 다음과 같은 ‘EU 관련 임팩트(EU-related impacts)’로 제한할 수 있음

* 주제, 하위주제 또는 임팩트의 조합 단위로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

- EU 시장에서 판매 또는 제공되었거나 판매 또는 제공될 것으로 합리적으로

예상할 수 있는 **제품 및 서비스**에서 발생하는 **임팩트**

-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, 기업의 **EU 내 활동**에서 발생하는 임팩트
- **(적용 조건)** EU 관련 임팩트에 대한 **유의미한 식별(meaningful identification)**이 가능하여, 임팩트를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음
- EU 전용 사업부문, EU 전용 제품 및 서비스, EU 시장을 위한 별도의 가치사슬 존재 여부가 유의미한 식별의 **예시판단기준**으로 제시됨

다. 공정한 표시 및 정보의 질적 특성

- **ESRS-40a** 보고서는 기업의 중요한 임팩트에 대한 **목적적합한 정보**를 **충실하게 표현**할 것을 요구함
- 이를 위해 공시되는 정보는 **비교가능성, 검증가능성 및 이해가능성**을 충족해야 하며, **ESRS-40a** 공시 요구사항으로 중요한 임팩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**기업특유 정보** 공시를 통한 보완이 요구됨

라. 임팩트 중요성

- **ESRS-40a**에 따라 공시할 정보는 **임팩트 중요성 평가**를 통해 결정됨
- ❶ **(공시할 정보 평가)** 정보는 정보의 누락, 오류, 불명확한 표시가 **이용자의 의사결정**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요함
- 이용자의 의사결정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되며, 기업은 개별 이용자의 특정 정보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요구되지 않음
- ①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**주요 이용자**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리는 의사결정
- ② 기업의 중요한 임팩트 및 임팩트 관리 방법에 대해 일반적인 목적의 **ESRS-40a** 보고서의 **기타 이용자**가 내리는 의사결정
- 보고할 정보는 ①중요한 임팩트와 관련된 **주제 또는 하위주제 식별** → ②해당 주제에 대해 **ESRS-40a 2 및 주제별 기준서**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보 결정 단계로 결정됨
- **ESRS-40a**에서 요구하는 **DR** 또는 데이터 포인트이더라도, **중요하지 않은 정보**는

공시해서는 **아니 됨**(shall not disclose)

- 기업은 모든 잠재적 임팩트를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, 중요한 임팩트가 **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, 지역, 업종 및 가치사슬**에 집중할 수 있음

② (임팩트 중요성 평가) 적절한 정성적 고려사항 및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중요한 임팩트를 평가

- 실제 및 잠재적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임팩트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

구분	실제	잠재적
긍정적	규모, 범위	규모, 범위, +발생가능성
부정적	규모, 범위, +구제가 불가능한 특성	규모, 범위, +구제가 불가능한 특성, +발생가능성

※ 규모(scale), 범위(scope), 구제가 불가능한 특성(irremediable character)은 '심각성(severity)'으로 통칭됨

- 만약 기업이 기후변화 이외의 주제에 대해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**중요한 EU 관련 임팩트** 식별을 목표로 임팩트 중요성 평가를 수행함
- 중요성 평가는 기업의 자체 영업 외에도 **상류 및 하류 가치사슬의 임팩트**까지 포괄함
- 기업은 **매 보고일** 사업활동, 기업구조, 사업관계, 임팩트 평가방법 등에 중요한 변화 **존재 여부**를 검토하고, 필요시 기존 중요성 평가 갱신이 요구됨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1 AR 20) 임팩트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출처가 될 수 있으며, 이에 ESRS-40a는 위험 또는 기회로 연결된 혹은 연결될 수 있는 임팩트에 대한 공시를 배제하지 않음
-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 목적으로 중요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, 중요한 임팩트 식별에도 해당 중요성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
- 단, 이때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지만 ESRS-40a 보고 목적상 중요한 임팩트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

③ (특정 상황 고려) 임팩트 중요성 평가 시 다음 두 가지 특정 상황(specific circumstances)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

상황	고려사항
❶ 他 주제 관련 임팩트에 대응하는 조치가 발생시키는 중요한 임팩트	• 하나의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다른 주제에서 새로운 중요한 임팩트를 발생시킬 수 있음 • 이때, 상이한 주제 간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 공시 필요 • (예시 사례)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(전환계획)이 자체 인력에 대해 중요한 부정적 임팩트 야기 → 자체 인력 관련 공시에 중요한 임팩트의 출처 (기후변화 관련 조치)를 명시하고 기후 관련 공시 내용을 상호참조함
❷ 통합 및 세분화	• 중요한 임팩트에 대한 충실한 표현이 가능한 수준(예: 주제, 부문, 자회사, 지역, 자산별)으로 임팩트를 통합 및 세분화할 것이 요구됨 • 통합 및 세분화 수준은 중요한 정보를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됨 • 연결 공시 시, 그룹의 법적 구조와 무관하게 연결 그룹 단위로 중요한 임팩트에 대한 평가 수행이 요구됨

마. 실사(Due Diligence)

□ ESRS-40a는 실사 행위를 의무화하지 않으며, 他 EU 법률(예: CSDDD)상 실사 의무를 확대 또는 변경하지 않음

- (실사의 역할) 실사는 기업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임팩트를 식별하고, 예방·완화·종료·최소화 및 시정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, 지속가능성 관련 실사 절차의 결과는 중요한 부정적 임팩트의 식별 및 평가에 투입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
- 자체 영업, 제품·서비스 및 사업관계를 통한 상·하류 가치사슬의 부정적 임팩트를 식별 및 평가하는 실사 절차는 ESRS-40a의 임팩트 중요성 평가와 긴밀히 연결됨

바. 보고기업 및 상·하류 가치사슬

① (보고기업 및 자체 영업) ESRS-40a 보고서의 보고기업은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함

○ 비EU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, 최종모기업 및 연결대상 자회사가 ESRS-40a 보고서의 보고범위에 포함됨

- 재무적 중요성이 없어 연결재무제표 범위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지속 가능성 보고경계에서도 제외할 수 있으나, 해당 종속기업과 관련된 특정 사실이나 상황으로 인해 그룹 차원에서 중요한 임팩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음

○ 자체 영업(own operations)은 연결재무제표상 최종모기업 및 자회사의 자산, 부채, 수익, 비용에 대응되는 사업을 포함하며, EU 내외 소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

② (상·하류 가치사슬) ESRS-40a 보고 시 중요한 상류 및 하류 가치사슬 정보 포함이 요구됨

○ 가치사슬에 관한 직접적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, 지역 또는 산업 평균이나 그 외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 사용 가능

○ ESRS-40a 주제별 기준(E1 제외)서는 자체 운영 관련 지표(E1-8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제외)만을 규정하고 있어, 기업은 필요시 가치사슬 임팩트를 다루는 기업특유 지표 공시가 요구됨

③ (예외규정) 자체 운영 및 가치사슬의 보고범위 결정 시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이 적용됨(주제별 기준서의 규정을 우선함)

① (리스) 임차자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임팩트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자체 운영으로, 임대자가 제공한 자산 사용과 관련된 임팩트는 임대인의 하류 가치사슬로 처리함

- 단, 임차자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않은 임팩트의 귀속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, 이러한 계약상 관계는 보고정보에 반영되어야 함

② (장기 종업원 급여) 기업의 장기 종업원 급여 제도(employee benefit schemes)를 통해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팩트는 가치사슬 임팩트로 취급함

④ (완화규정)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완화규정이 적용됨

① (취득시) 보고기간 중 자회사를 취득한 경우, 중요성 평가 및 ESRS-40a

보고서 내 해당 자회사의 포함을 차기 보고기간까지 유예 가능

② (처분시) 보고기간 중 자회사를 처분한 경우, 해당 자회사를 **중요성 평가 및 보고범위에서 기초부터 제외하도록 조정 가능**

- 완화규정 적용 시, 취득 이후 또는 처분 시점까지 해당 자회사에서 발생한 **유의적인 사건 중 그룹의 지속가능성 관련 임팩트**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공시(이용가능한 정보 기반)가 요구됨

사. 보고기간, 기준연도 및 기간범위

① (보고기간 및 기준연도) ESRS-40a 보고서의 보고기간 및 지표 산정기간은 **재무제표의 보고기간과 일치해야 함**

- 기준연도(base year)는 후속 기간의 성과 및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거의 기준시점 또는 기간을 의미함

② (기간범위) 기준서에서 정하는 정의를 따르되, 임팩트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**기업특유의 정의** 사용 가능

- (원칙) 단기, 중기, 장기에 대해 기준서에서 제공하는 정의(아래 참조)를 적용

구분	정의
단기	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기간 (통상적으로 1년)
중기	단기 종료 후 ~ 5년
장기	5년 이상

- 임팩트 또는 조치가 **5년 보다 긴 기간에 걸쳐 발생 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** 되는 경우 ‘**장기**’에 대해 **추가적인 세분화** 가능
- (예외) 기업의 사업모형, 업종 특성 및 관련 임팩트의 특성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, ‘**중기**’ 및 ‘**장기**’에 대해 **기업특유의 정의** 적용 가능
- 이때, 기준서에서 정한 기간범위와 다른 기간을 사용한 **사실 및 사유** 설명이 요구됨

아.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

① (비교정보) **정량적 지표 및 필요한 서술정보**에 대해 직전 보고기간의 비교정보 제공이 요구됨

○ 공시방법 또는 산정방식 변경이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, 가능한 범위에서 전기 정보 재작성 또는 변경사항 설명 필요

○ (경과규정) ESRs-40a 최초 적용연도에는 비교정보 공시 면제

② (판단 및 불확실성) 지속가능성 정보 작성 과정에서 내린 **중요한 판단**, 존재한 **유의적인 불확실성**(측정 불확실성 및 결과 불확실성)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요구

③ (작성 관련 완화규정)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완화규정이 제공됨

❶ (특정 활동 제외) 지표 산정(calculation) 시 중요한 임팩트의 **유의적인 원인(driver)**이 아닌 활동 제외 가능

- 단, 해당 활동의 제외가 정보의 **목적적합성**과 **충실한 표현**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

❷ (보고범위 제한)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일부 지표(스코프 1, 2, 3 온실가스 배출량 제외)에 대해 **부분적인 보고범위** 적용 가능

- **중요한 임팩트**는 **완전한 보고범위** 차원에서 식별되었으나, 상응하는 지표의 보고범위가 제한됨을 명시할 필요

❸ (공동영업 제외) 일부 주제*의 지표 산정 시 기업이 **운영통제력**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제외 가능

* ESRs-40a E2 오염, ESRs-40a E3 수자원, ESRs-40a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, ESRs-40a E5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

④ (비례성 메커니즘) 다음을 수행할 때,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*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모든 정보만을 사용할 것이 요구됨

* 과도한 원가 또는 노력에 대한 판단은 기업 특유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며, 기업의 비용과 정보이용자의 효익 간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함

❶ 중요한 임팩트 식별

❷ 가치사슬의 범위(폭 및 구성 포함) 결정

❸ 가치사슬 정보로 공시 범위 범위 확장

❹ 지표 정보 작성

- ⑤ (보고기간후사건) 보고기간 종료 후부터 보고서 승인일까지 발생한 사건 중,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보고정보에 반영이 요구됨
- ⑥ (전기 오류) 과거기간 공시 정보 중 중요한 오류 발견 시, 수정 및 오류의 성격과 수정으로 인한 영향 설명이 요구됨
- 과거기간 정보 재작성이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, 해당 사실 및 이유 설명이 요구됨
- ⑦ (정보의 생략) 요건 충족 시 다음의 정보는 ESRS-40a 보고서 내 생략이 허용됨

- ① 공개 시 기업의 상업적 지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정보
- ② 지적 자본, 지적 재산권, 노하우, 기술 정보 또는 혁신의 결과물에 해당하며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정보
- ③ '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규정 (EU) 제2023/2418호'상 '기밀정보(classified information)'로 분류된 정보 또는 관할권별 관련 법에서 규정한 기밀정보
- ④ 다른 유럽연합 법률이나 EU 관할권의 국내법에 규정된 의무로 인해, 또는 자연인의 사생활이나 안전을 보호하거나 법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단 접근이나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기타 정보

자. ESRS-40a 보고서의 구조 및 표시 관련 요구사항

- ① (일반적인 표시 요구사항 및 구조) ESRS-40a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시는 ESRS-40a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, 다음과 같이 표시될 것이 요구됨
- (표시 관련 요구사항) ESRS-40a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그 밖의 정보가 명확하게 구분되며, 사람과 기계 모두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됨
 - (구조) (1) 일반 정보, (2) 환경 정보, (3) 사회 정보, (4) 거버넌스 정보 순서로 구성됨
 - 단,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표시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, 다른 구조를 사용할 수 있음
- ② (보충정보) 他법률 또는 他기준서(예: GRI 기준)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보고서에 포함 가능
- (요건) 보충정보가 중요성 평가에 따른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

중요한 정보를 모호하게 하지 않아야 함

③ (보고서 내 정보 표시 선택) 보고서 내 환경, 사회 및 거버넌스 관련 중요한 임팩트에 대한 **핵심요약(executive summary)** 제공 가능

- ESRS-40a 보고서 이외의 보고서(예: 경영자 보고서)에 포함된 핵심요약을 참조하는 것 또한 가능함

차. 연계된 정보 및 다른 기업보고와의 연계

① (연계된 정보) 정보 이용자가 다음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필요

- ❶ ESRS-40a 보고서 내 정보 간 연계
- ❷ ESRS-40a 보고서와 다른 기업보고 문서(예: 재무제표)와의 연계

② (재무제표와의 직간접적 연계) 가정의 일관성을 포함하여, 재무제표와의 직접 연계성(direct connectivity) 및 간접 연계성(indirect connectivity)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필요

- (직접 연계성) ESRS-40a 보고서에 금액 정보 또는 재무제표에도 제시된 다른 양적 정보가 포함된 경우, 재무제표 항목에 대한 직접 상호참조가 요구됨
- (간접 연계성) 재무제표에 제시된 금액의 합계 또는 그 일부가 ESRS-40a 보고서에 포함된 경우, 보고서 내 금액 정보가 재무제표 내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금액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할 것이 요구됨
- (가정의 일관성) ESRS-40a 보고서 작성 시 가능한 수준에서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및 가정과 일관된 데이터 및 가정 사용이 요구됨
 - 데이터 및 가정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, 해당 차이에 대한 설명 필요

③ (참조를 통한 포함) **他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참조하여 ESRS-40a 보고서 내 포함시킴으로써 ESRS-40a의 요구사항 충족 가능**

- (요건) 참조되는 정보는 ESRS-40a 보고서와 **동일한 시점** 또는 ESRS-40a 보다 이른 시점에 접근 가능해야 하며,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**명확한 상호참조**가 제공될 필요. 또한,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로 제공 또는 번역되어야 하며, ESRS-40a 보고서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이 요구됨

- (제3국 기준 적용시) 비EU 제3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(예: KSSB 기준)을 적용하여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이 ESRS-40a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제3국 보고서에 대한 참조를 통해 포함시키는 경우, 참조된 정보의 위치(즉, 페이지 번호 및/또는 단락 번호)를 명시하는 목차를 ESRS-40a 보고서에 추가할 것이 요구됨

카. 경과규정

□ ESRS-40a 최초 적용 1~3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이 적용됨

구분	적용 기간	내용
가치사슬 정보	최초 3개 회계연도	가치사슬 정보 공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, 다음 정보로 대체 가능 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노력 ②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사유 ③ 향후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
비교정보 공시	최초 회계연도	전기 비교정보 공시 생략 가능
ESRS-40a E4, S2, S3, S4	최초 2개 회계연도	ESRS-40a E4, S2, S3, S4의 모든 공시 요구사항 생략 가능
ESRS-40a E2-5	최초 3개 회계연도	ESRS-40a E2-5에서 요구하는 우려물질(SoC) 관련 정량정보 생략 가능
	최초 회계연도	(SVHC가 포함된 성형품 사용 기업의 경우) 고위험성우려물질(SVHC) 관련 정보 생략 가능
ESRS-40a S1	최초 회계연도	• (S1-6, S1-10, S1-11, S1-12, S1-14) 모든 DP 생략 가능 • (S1-7) 비EEA 국가 소재 자체 직원에 관한 DP 생략 가능

		(S1-13) 문단 38(d), 38(e) 및 비직원(non-employee) 관련 DP 생략 가능
--	--	---

2 | ESRS-40a 2 일반 공시

□ (개요) ESRS-40a 2는 모든 주제에 걸쳐 적용되는 포괄적인 공시 요구사항(DR)들을 규정함

○ (공시 요구사항) ESRS-40a 2의 15개 DR은 다음과 같음

ESRS 2 DR			
1	작성 근거	BP-1	ESRS-40a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근거
2		BP-2	특정 상황 관련 공시
3	거버넌스	GOV-1	행정, 관리 및 감독기구의 역할
4		GOV-2	지속가능성 관련 성과를 보상 정책에 통합
5		GOV-3	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설명
6		GOV-4	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
7	전략	SBM-1	전략,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
8		SBM-2	이해관계자의 관심과 관점
9		SBM-3	중요한 임팩트와 전략·사업모형과의 상호작용
10	임팩트 관리	I-1	중요한 임팩트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 설명
11		I-2	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다루지는 중요한 임팩트와 공시 요구사항
12		GDR-P	중요한 임팩트를 관리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
13		GDR-A	중요한 임팩트와 관련된 조치 및 자원
14	지표 및 목표	GDR-M	중요한 임팩트와 관련된 지표
15		GDR-T	목표를 통한 정책 및 조치의 효과성 추적

- 일반 공시 요구사항(General DR)의 경우, 기업이 중요하다고 식별한 각 임팩트와 관련하여 이행 중인 정책(P), 조치(A) 그리고 관련된 지표(M) 및 목표(T)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다룸

가. 작성근거

① (BP-1) ESRS-40a 보고서의 작성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

- (혼합 접근법 적용 여부) ESRS-40a 보고서가 글로벌 접근법 또는 혼합 접근법 중 어느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

- 혼합 접근법 적용 시, 주제·하위주제·임팩트 그룹별로 다음의 정보 공시 필요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❶ ESRS-40a 1 문단 29의 조건을 충족한 방법 ❷ EU 관련 임팩트 결정 방법 |
|---|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2 AR 1) EU 관련 임팩트 결정 방법에 대한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됨
 - ① 보고경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론 및 매개변수
 - ② 추정에 사용한 가정 및 투입변수
 - ③ 추정 결과의 정확도 수준
- BP-1의 설명과 I-1의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공시는 서로 연계하여 중복을 피하는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음

- (가치사슬 범위) 상류 및 하류 가치사슬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설명
- (준거 기준) 보고기간 말 현재 적용되는 ESRS-40a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
- (완화 규정 등) ESRS-40a 1에서 허용하는 완화 규정, 선택사항(options), 기타 특정 규정(specific provision)을 적용한 경우, 해당 사실 및 관련 정보
- (EU 법률 및 규정 개념의 제3국 적용) EU 법률 또는 규정에서 유래한 특정 용어 또는 개념을 해당 EU 법률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사업에 적용하면서 근사(approximations) 또는 추정(estimations)을 사용한 경우, 다음의 정보 공시가 요구됨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❶ 영향을 받은 공시 요구사항 식별 및 공시 작성에 사용된 접근법 설명 ❷ 일부 보고경계가 EU 법률의 적용범위 밖에 있어 발생하는 정보의 한계 ❸ 이러한 한계가 적용되는 보고경계(reporting boundary)의 범위 |
|--|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AR 4) 보고경계에는 EU 법률 및 규정 적용대상 사업활동과 EU 법률 및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활동이 모두 포함됨

- ② (BP-2) 기업이 적용한 단계적 경과규정과, 제3국 최종모기업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ESRS-40a 보고서에 포함된 제한 사항, 그리고 검증 의견의 부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

- (단계적 경과규정 적용시) 단계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정 주제별 기준서의 공시를 생략하더라도, 해당 주제가 중요한 임팩트와 관련되는지

- 만약 최소 1개 주제가 중요하다고 평가된 경우, 다음의 정보 공시가 요구됨

- ❶ 중요하다고 평가된 주제 또는 하위주제, 해당 주제/하위주제 관련 **임팩트와 기업의 사업모형 및 전략 간 관계**
- ❷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설정한 시한이 정해진 **목표**에 대한 간략히 설명,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이룬 **진척도,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와 관련된 목표가 명백한 과학적 증거**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
- ❸ 해당 주제와 관련된 기업의 **정책**
- ❹ 해당 주제와 연관된 부정적 임팩트를 식별, 모니터링, 예방, 완화, 종결, 최소화 또는 시정하기 위해 취한 **조치**
- ❺ 해당 주제와 관련된 **지표**

- 주제별 기준서 전체가 아닌 **개별 DR**에 대한 단계적 경과규정을 적용한 경우, 해당 사실 명시 필요

- (최종모기업 정보 미획득시) EU 소재 자회사 또는 지점이 비EU 최종모기업에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, 해당 사실을 명시
- (인증의견 미취득시) ESRS-40a 보고서에 인증의견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, 해당 사실을 명시

나. 거버넌스

- ① (GOV-1) 행정, 관리 및 감독 기구의 역할 및 책임과 중요한 임팩트에 대한 모니터링, 관리 및 감독과 관련된 프로세스,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규정함

○ 세부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

- ❶ 이사회 등의 구성과 독립성·성별 등 다양성
- ❷ 중요한 임팩트 관리·감독을 위한 전문성 및 역량
- ❸ 중요한 임팩트에 대한 책임을 가진 개인·위원회·기구
- ❹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 진행상황에 대한 감독
- ❺ 중요한 임팩트를 다루기 위한 전략·정책·조치에 대한 감독 방식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2 AR 11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GOV-1은 **중요한 EU 관련 임팩트**의 모니터링, 관리 및 감독과 관련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

② (GOV-2) 행정, 관리 및 감독 기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, **지속가능성 주제와 연계된 모든 보상 정책**의 주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

- 지속가능성 주제와 연계된 보상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,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보상 정책에 연계되는 방식 설명

- ❶ 보상 정책의 **주요 특징**(key characteristics)
- ❷ 사용된 지속가능성 관련 **목표 또는 지표** (존재시)
- ❸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또는 지표에 따라 결정되는 **변동보수의 비중**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2 AR 12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GOV-2는 **중요한 EU 관련 임팩트**와 관련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

③ (GOV-3) ESRS-40a 보고서 내에서 **실사 절차의 주요 단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**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

- 실사 절차의 주요 측면(aspects)과 단계(steps)가 ESRS-40a 보고서 내 반영된 위치를 설명
- 실사 절차의 주요 단계를 ESRS-40a 보고서의 관련 공시 내용과 **상호참조하여 표 형식**으로 제시 가능

④ (GOV-4)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하여 기업의 **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와 시스템**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

-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위험관리,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**범위, 주요 기능 및 구성요소**
- 보고 프로세스와 관련된 위험관리의 맥락에서, **데이터의 완전성과 무결성**, 그리고 **추정 결과의 정확성** 고려 필요

다. 전략

① (SBM-1) 기업의 중요한 임팩트와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, 중요한 임팩트와 관련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, 사업모형, 상·하류 가치사슬의 핵심 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규정함

○ 세부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

- ❶ 사업모형, 상·하류 가치사슬 및 가치사슬 내 기업의 위치에 대한 설명
- ❷ 중요한 제품·서비스 그룹, 중요한 시장 또는 고객그룹과 이들이 기업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에 기여하는 관련성, 그리고 보고기간 중 중요한 변화
- ❸ 해당되는 경우, 특정 시장에서 금지된 중요한 제품·서비스
- ❹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유의적인* 부문(sectors)
* 기업 매출의 10%를 초과하거나, 기업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중요한 임팩트와 연결됨
- ❺ 해당되는 경우, (1) 화석연료 부문, (2) 화학제품 생산, (3) 금지무기 산업, (4) 담배 재배 및 생산 관련 사업활동 영위 여부 및 관련 매출

❷ (SBM-2) 기업의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과,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및 관점이 어떻게 기업의 행정·관리·감독 기구에 전달되어, 이를 바탕으로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반영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규정함

○ 세부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

- ❶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참여(engagement)에 대한 요약 설명
- ❷ 전략 및 사업모형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관점에 대한 기업의 이해
- ❸ 중요한 임팩트와 관련하여 주요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(근로자 대표 포함)의 관심과 관점이 행정·관리·감독기구에 어떻게 전달되는지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2 AR 19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SBM-2는 **중요한 EU 관련 임팩트**와 관련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

❸ (SBM-3) 중요한 임팩트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

○ 중요한 임팩트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에서 비롯되는 방법, 그리고 전략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임팩트에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2 AR 21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SBM-3은 **중요한 EU 관련 임팩트**와 관련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

라. 임팩트 관리

- ① (I-1) 기업이 임팩트 및 연관 주제를 식별하고, 이들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규정함

○ 세부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

- ❶ 임팩트 및 연관 주제를 식별하며, 그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따르는 프로세스 및 의사결정 단계에 대한 간결한 설명
(자체 운영 및 상·하류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접근 방식, 주요 방법론, 반영된 입력값 및 가정, 정성적 고려 사항이나 정량적 기준치 포함)
- ❷ 임팩트의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에 따라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는지, 부정적 임팩트를 예방, 완화, 종결, 최소화 및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고려했는지, 그리고 특정 활동, 사업 관계 또는 지리적 영역과 관련된 부정적 임팩트의 위험이 높은 분야를 어떻게 고려했는지
- ❸ 해당 평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절차에 근거한 것인지, 그리고 기업의 임팩트를 식별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와 협의하는 경우, 그러한 협의가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
- ❹ 전기 대비 프로세스의 유의적인 변경
- ❺ 중요성 평가를 마지막으로 갱신한 시점

- 기업의 실제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에 **특화된 정보**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, 일반적·정형화된 공시(boilerplate)는 지양할 필요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2 AR 23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I-1 세부 공시 요구사항 ❶은 **중요한 EU 관련 임팩트**와 관련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

- ② (I-2) **중요성 평가의 결과**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규정함

○ 세부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

- ❶ 실제·잠재적, 긍정적·부정적 중요한 임팩트에 대한 간결한 설명
(해당 임팩트가 사람 또는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, 관련 주제 및 해당 임팩트가 자체 운영과 상·하류 가치사슬의 어디에 연결되는지 포함)
- ❷ 기후변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E1의 모든 DR을 생략하는 경우 해당 판단의 근거
- ❸ 전기 대비 중요한 임팩트의 변화
- ❹ ESRS-40a 보고서 작성 시 준수한 DR 목록과 각 공시의 위치

(‘참조를 통한 포함’을 통해 포함된 DR 목록 별도 제시)

- ⑤ 제공된 ‘보충’ 정보의 목록
- ⑥ 사업유형 또는 국가·지역별, 강제·의무노동 및 아동노동 사건의 고조된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
- ⑦ ESRs-40a 2 부록 A에 나열된 다른 EU 법률에서 파생된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표 (해당 데이터 포인트를 ESRs-40a 보고서 내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명시하고,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‘중요하지 않음’이라고 표시)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2 AR 27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1-2 세부 공시 요구사항 ①은 **중요한 EU 관련 임팩트**와 관련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

- ③ (GDR-P) 기업이 중요한 실제 및 잠재적 **부정적 임팩트**를 방지, 완화, 종식, 최소화 또는 시정하고, 중요한 **긍정적 임팩트**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규정함

○ 세부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

- ① 정책의 주요 내용, 일반 목적 및 관련된 중요한 임팩트
(보고기간 중 정책 변경이 있었던 경우 해당 변경 내용 포함)
- ② 정책의 적용범위 또는 제외범위: 자체 영업, 상·하류 가치사슬, 지역 및 (정의되어 있는 경우)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그룹
- ③ 정책이 기업이 준수하기로 약속한 제3자 기준 또는 이니셔티브를 참조하는 경우 해당 기준 또는 이니셔티브
- ④ 사회 주제의 경우, 정책 설정 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고려하였다면 해당 내용

- 또한 「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」, 「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」, 「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」 이행을 약속하는 **포괄적인 인권정책**(overarching human rights policy) **보유 여부** 공시가 요구되며, 보유시 정책이 포괄하는 **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그룹**(예: 자체 인력, 가치사슬 근로자, 최종 소비자 등)을 명시할 것이 요구됨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2 AR 34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GDR-P는 **중요한 EU 관련 임팩트**와 관련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

④ (GDR-A) 기업이 중요한 임팩트를 관리하고,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했거나 계획 중인 **주요 조치**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

○ **(조치)** 기업이 중요한 임팩트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 조치(key actions)를 시행하는 경우, 세부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

- ❶ 보고연도에 이행한 주요 조치 및 향후 계획한 조치(기간범위 포함)
- ❷ 주요 조치의 적용 범위
- ❸ 주요 조치의 예상 결과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법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2 AR 36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GDP-A 중 조치 관련 공시 요구사항은 **중요한 EU 관련 임팩트를 관리하기 위해 이행한 조치**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어야 함

○ **(자원)** 주요 조치의 이행에 유의적인 재무자원(자본적지출 또는 운영비용)이 배분되었거나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세부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

- ❶ 현재 및 미래에 배분된 유의적인 재무자원의 유형, 조치의 이행 능력이 특정 전제조건에 의존하는지
- ❷ 보고기간 중 실제 배분된 유의적인 재무자원 금액과 관련 재무제표 계정과목 또는 주석
- ❸ 주요 조치의 이행을 위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재무자원의 대략적인 범위

마. 지표 및 목표

① (GDR-M) 기업의 지표 공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

○ 중요한 임팩트와 관련된 ①**주제별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지표**와 ②**기업특유 지표** 공시가 요구되며, **지표별로** 다음의 정보 공시가 요구됨

- ❶ 지표 자체, 측정단위, 계산방법 및 계산에 사용된 출처 또는 매개변수 (해당되는 경우, 추정 방법론, 중요한 가정 및 한계 포함)
- ❷ 가치사슬 지표의 경우, 간접자료 또는 프록시에 의존하는지 여부와 향후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된 조치
- ❸ 지표에 대한 맥락 정보(contextual information)
- ❹ 전기 대비 성과의 중요한 변화, 목표 달성 진행상황 및 중요한 인수·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 진행상황에 미치는 영향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2 AR 44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GDR-M에는 **EU 관련 임팩트에 대한 지표의 추정**이 포함됨. 이때, 지표에 대한 맥락 정보에 지표가 EU 관련 임팩트만을 포괄하고 있음을 명시할 것이 요구됨
- (ESRS-40a 2 AR 45) 혼합 접근법이 적용된 주제, 하위주제, 임팩트 조합에 대해서는 지표 산정 시 **중요한 EU 관련 임팩트만 반영**할 것이 요구됨
- (ESRS-40a 2 AR 46) EU 관련 임팩트에 대한 지표 추정 시, 주제별 기준서의 특정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**EU 관련 임팩트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배분 기준(allocation key)** 사용이 요구됨
- (ESRS-40a 2 AR 47) 배분 기준 선정 시 (1) 임팩트의 성격과 (2) 임팩트가 발생하는 지리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음

② (GDR-T) 기업이 인간, 환경 또는 기업 자체에 대한 기대 성과로 정의된 **목표를 설정**하는 방법, 중요한 임팩트와 관련하여 **정책 및 조치의 효과성**을 추적하는 방법,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택된 **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도와 효과성**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

- 중요한 임팩트와 관련하여 설정한 **측정가능**하고, **기한이 정해져 있으며, 결과지향적**인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공시할 것이 요구되며, **목표별로** 다음의 정보 공시가 요구됨

- ① 정책목표 및 조치와의 관계
- ② 달성하려는 목표값 또는 정성적 목표수준(절대목표인지 상대목표인지와 측정단위 포함)
- ③ 자체 영업 또는 상·하류 가치사슬 및 지리적 경계를 포함한 목표의 적용범위
- ④ 기준값 및 기준연도
- ⑤ 목표연도 또는 목표기간, 중간목표
- ⑥ 목표 설정에 사용된 방법론 및 중요한 가정
- ⑦ 법률상 요구되는 목표인지 여부
- ⑧ (해당되는 경우) 적용한 시나리오, 주요 데이터 출처 및 국가·EU·국제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수준
- ⑨ 환경 주제 목표가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

- 측정가능한 **결과지향적(outcome-oriented)**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, 정책 및 조치의 **효과성 추적 여부 및 방법** 공시가 요구됨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2 AR 52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GDR-T는 주제, 하위주제, 임팩트 조합의 **중요한 EU 관련 임팩트**를 관리하기 위해 **설정**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어야 함

3 | 주제별 기준서 - 환경 (ESRS-40a E1~E5)

가. ESRS-40a E1 기후변화

※ ESRS-40a E1이 IFRS S2 또는 KSSB 기준 제2호 대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**음영 처리** 함

□ (목적) ESRS-40a E1(이하, E1)은 **기후변화**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함

○ (하위주제) 기후변화 완화*, 기후변화 적응, 에너지

*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**1.5°C**로 제한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의미

□ (전략) 1개 공시 요구사항(E1-1)이 포함됨

○ (E1-1 **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**)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기업의 과거·현재·미래 노력을 이해하고,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파리협정에 따른 **1.5°C 목표** 및 **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**에 부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

- 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, 탈탄소화 수단, 주요 조치, 전환계획 이행에 필요한 투자 및 자금 조달, 행정·경영·감독기구의 승인, 전체 사업전략에 전환계획이 내재·정합되는 방식, 전환계획 이행을 통해 전략·사업모형이 **1.5°C 및 EU 2050 기후중립 목표와 어떻게 호환되는지**를 포함한 전환계획의 주요 특징
- ② (해당 되는 경우) 보고기간 중 석탄, 석유 및 가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투자한 자본적지출 금액
- ③ 계획이 전제로 하는 주요 가정 및 의존성(예: 특정 기술의 배치, 필요한 인력의 가용성 등)
- ④ 주요 물리적 자산 및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**락인 배출량**(locked-in emissions)*이 전환계획 달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및 설명
* 기업의 주요 자산이나 판매된 제품이 운영 수명기간 동안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
- ⑤ 전환계획 이행의 진행상황

-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**전환계획이 없는 경우**, 해당 사실과 **향후 채택 예정 여부** 및 시기를 공시
- **1.5°C 목표와 호환되지 않는 감축목표를 참조하는 전환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경우**, 해당 사실 공시

□ (임팩트 관리) 2개 공시 요구사항(E1-4, E1-5)이 포함됨

- **(E1-4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정책)**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정책을 **GDR-P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 - 기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갱신 시, **시나리오 분석**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(may)
- **(E1-5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조치 및 자원)**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**주요 조치**와 조치 이행에 **배분된 자원**을 **GDR-A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 - 구체적으로, 탈탄소화 수단(decarbonisation lever)별로 (1) **주요 기후변화 완화 조치**, (2) **달성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**과 (3) **예상 감축량**을 공시

□ (지표 및 목표) 5개 공시 요구사항(E1-6, E1-7, E1-8, E1-9, E1-10)이 포함됨

- **(E1-6 기후변화 관련 목표)**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**GDR-T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 - **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**에 대해서는 다음 정보를 공시함

- ❶ **스코프 1, 2, 3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***의 감축 목표 (개별 또는 결합 중 선택. 단, 결합목표의 경우 포함되는 스코프와 각 스코프의 비중 명시). 필요시 집약도 목표 포함
* 탄소 제거, 탄소 크레딧, 회피 배출량은 목표 달성수단에 포함되지 않음
- ❷ 감축 목표의 범위(지역, 포함되는 온실가스 종류, 포함되는 기업 등)가 E1-8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범위와 상이할 경우, 스코프 1, 2, 3 배출량별 목표 적용비율 및 포함되는 온실가스 종류
- ❸ 감축목표가 과학기반이며 1.5°C 상승 제한과 호환되는지
(목표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,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 사용 여부 등 포함)

-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별도로 **넷제로(net-zero) 목표**를 공시하는 경우, **잔여 온실가스 배출량**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**중화**할 계획인지 설명

- 목표 설정에 사용되는 기준값 및 기준연도(최근의 대표성 있는 연도 선택)는 목표 또는 보고경계에 핵심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음

- (E1-7 에너지 소비량 및 믹스) 자체 운영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(단위 MWh)을 상황에 따라 다음의 에너지원별로 세분화(아래 참조) 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함

상황	세분화 수준	
일반 기업	• 화석연료 • 원자력 • 재생에너지원(완전한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수소 포함)	
高 기후 임팩트 부문* 해당 기업 * 유럽 NACE 산업 분류 기반	화석연료	• 석탄 및 석탄제품, • 원유 및 석유제품, • 천연가스, • 기타 화석연료 • 화석연료원에서 생산된 구매·취득 전력, 열, 증기 또는 냉방
	비화석연료	• 원자력 • 재생에너지원

- 에너지 생산 기업은 ①비재생에너지 생산량과 ②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구분하여 공시할 것이 요구됨

- (E1-8 스코프 1, 2, 3 온실가스 배출량) 자체 운영 및 가치사슬 활동으로 인한 임팩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공시를 요구함

- 스코프 1, 2, 3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톤 단위로 공시

스코프 1 배출량	• (해당되는 경우) EU ETS 적용 비중 추가 공시 • EU ETS 적용을 받는 활동의 스코프 1 배출량은 EU ETS 방법론에 따라 산정 필요
스코프 2 배출량	• 지역기반 및 시장기반 배출량 공시 • 시장기반 배출량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맥락 정보 추가 공시
스코프 3 배출량	• 유의적인 카테고리별로 세분화된 배출량 및 합계 배출량 공시 • 각 유의적인 카테고리는 매년 업데이트, 전체 스코프 3 인벤토리는 최소 3년 혹은 중요한 사건·환경변화 발생 시 갱신

- 생물기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스코프 1, 2, 3 온실가스 배출량과 별도로 공시

- 스코프 1 및 2 배출량은 ①회계상 연결 실체와 ②기타 피투자자로 세분화하여 공시

-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

- (조직경계) 원칙적으로는 재무통제 접근법 적용. 지분을 접근법 또는 운영통제 접근법 적용도 허용됨
- (정보 작성 기준) 원칙적으로는 GHG 프로토콜(2004)을 고려. 환경발자국 방법론 관련 권고안(Commission Recommendation (EU) 2021/2279) 또는 ISO 14064-1:2018에 대한 고려도 허용됨
- (GWP 값) 최신의 IPCC 평가 지구온난화지수 값 사용. 단, 과거 GWP 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거나 가용가능한 경우, 해당 값을 사용하고 사유를 설명
- (금융배출량) 금융기관은 'PCAF Part A 금융배출량'에 대한 고려 요구

- (E1-9 GHG 제거 및 탄소 크레딧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완화 프로젝트) 기업의 GHG 감축 및 영구적 제거 활동, 탄소 크레딧의 규모 및 품질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함

- GHG 제거 또는 저장 프로젝트를 시행한 경우, 다음 정보에 대한 공시가 요구됨

- ❶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
- ❷ 프로젝트별 GHG 제거량 및 저장량
- ❸ 비영구성(non-performance) 관련 불확실성 관리 방식
(가정과 누출 및 역전 현상의 파악 및 모니터링 포함)
- ❹ 보고기간 중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경우, 총량 및 감소된 제거/저장량

- 자체 운영 및 가치사슬 밖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감축 및 제거와 관련하여 구매한 탄소 크레딧이 존재하는 경우, 다음 정보에 대한 공시가 요구됨

- ❶ 인정된 품질기준에 따라 검증되고 보고기간에 취소(cancelled)된 크레딧
- ❷ 보고기간에 구매했으나 아직 취소하지 않은 크레딧
- ❸ 제거 프로젝트(자연 기반 흡수원, 기술 기반 흡수원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포함)에서 발생한 크레딧의 비중

- (E1-10 내부 탄소 가격)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관련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내부 탄소 가격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함

- 내부 탄소 가격 제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에 대한 공시가 요구됨

- ❶ 투자 의사결정, 이전가격, 시나리오 분석 등 의사결정에 탄소 가격 사용 여부 및 방법
- ❷ 내부 가격 책정 방식(internal pricing scheme)별,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평균 가격

나. ESRS-40a E2 오염

□ (목적) ESRS-40a E2(이하, E2)는 **오염**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함

- **(하위주제)**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미세플라스틱, 우려물질(SoC) 및 고위험성우려물질(SVHC)
- **(지역별 맥락 고려)** 중요한 임팩트가 특정 지리적 위치와 관련되는 경우, 적절한 수준(예: 사업장,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지역)으로의 **통합 및 세분화** 고려가 중요함

□ (임팩트 관리) 2개 공시 요구사항(E2-1, E2-2)이 포함됨

- **(E2-1 오염 관련 정책)** 오염 관련 정책을 **GDR-P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- **(E2-2 오염 관련 조치 및 자원)** 오염 관련 **주요** 조치와 조치 이행을 위해 배분된 자원에 대한 정보를 **GDR-A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□ (지표 및 목표) 3개 공시 요구사항(E2-3, E2-4, E2-5)이 포함됨

- **(E2-3 오염 관련 목표)** 오염 관련 목표를 **GDR-T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- **(E2-4 대기·수질·토양 오염)** ①대기, 수자원, 토양으로의 **오염물질 배출**과 ②미세플라스틱의 제조, 사용 및 배출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함
- 자체 운영^{*1}에서 대기, 수자원, 토양으로 배출(환경사고로 인한 경우 포함)된 **중요한 오염물질 배출량^{*2}**과 제조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**주요(primary) 미세플라스틱의 사용량 및 환경으로의 배출량** 공시가 요구됨

*1 외부처리시설(external treatment plants)로 이전되는 수질오염물질은 가치사슬 하류에서의 오염에 해당함. 해당 오염이 중요한 경우, **기업특유 공시**로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것이 기대됨

*2 중요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업의 사업활동과 부문을 고려한 경영진 판단을 통해 식별함. 특정 오염물질 배출량의 중요성을 판단할 때 Regulation (EU) 2024/1244 부록 II에 포함된 기준치(release thresholds)를 고려할 수 있음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E2 AR 4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**주요 미세플라스틱**에는 다음이 포함됨
 - (1) EU 소재 자체 사업장에서 **제조**되었거나, (2) EU 이외의 자체 사업장에서 제조되었지만 EU 시장에서 판매 또는 제공되었거나 그럴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

- (1) EU 소재 자체 사업장의 **제품에 사용**되었거나, (2) EU 이외의 자체 사업장의 제품에 사용되었지만 EU 시장에서 판매 또는 제공되었거나 그럴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
- (1) EU 소재 자체 사업장에서 **환경으로 직접 배출**되었거나, (2) EU 이외의 자체 사업장에서 배출되었으나 그 배출이 EU 시장에서 판매 또는 제공되었거나 그럴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제품과 관련된 경우

○ **(E2-5 우려물질 및 고위험성우려물질) SoC 및 SVHC의 제조, 수입 및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임팩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**, ①화학물질 제조·수입 기업, ②물질(substances) 사용자, ③SVHC 함유 성형품(article)의 제조·수입·사용 기업별로 세분화된 공시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

- **(화학물질* 제조·수입 기업) SoC 및 SVHC의 조달량, 제조량, 시장 출시량 및 환경 내 직접 배출량**

* 기업의 주된 활동이 비화학물질 제조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

- **(물질 사용자)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용한 SVHC의 총 중량과 환경에 직접 배출한 SVHC의 총 중량**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E2 AR 9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SoC 및 SVHC의 총중량 범위는 다음과 같음
 - EU 소재 자체 사업장에서 조달된 물질
 - EU 소재 자체 사업장에서 제조된 물질
 - EU 및 EU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물질 중 EU 시장에 판매 또는 제공되었거나 그럴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물질
 - EU 자체 사업장에서 직접 환경으로 배출된 물질, 그리고 EU 이외의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었으나 그 배출이 EU 시장에서 판매 또는 제공되었거나 그럴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제품과 관련된 물질

- **(SVHC 함유 성형품의 제조·수입·사용 기업) 조달하거나 시장에 출시하는 성형품의 SVHC 농도가 0.1%를 초과하는 경우, SVHC의 명칭**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E2 AR 10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공시 대상 물질은 다음과 같음
 - EU 소재 자체 사업장에서 조달된 구성품(components) 또는 성형품에 포함된 물질
 - EU 소재 자체 사업장의 구성품 또는 성형품, 그리고 EU 이외 자체 사업장의 구성품 또는 성형품 중 EU 시장에서 판매 또는 제공되었거나 그럴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구성품 또는 성형품에 포함된 물질

다. ESRS-40a E3 수자원

□ (목적) ESRS-40a E3(이하, E3)은 수자원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함

○ (하위주제) 물 사용(취수 포함), 물 소비, 방류, 저장

- E3에서 ‘물(water)’은 담수와 그 이외의 종류(예: 해수, 지하수, 지표수 등)를 모두 포괄함

○ (지역별 맥락 고려) 중요한 임팩트가 특정 지리적 위치와 관련되는 경우, 적절한 수준(예: 사업장, 유역 등)으로의 **통합 및 세분화 고려**가 중요함

□ (임팩트 관리) 2개 공시 요구사항(E3-1, E3-2)이 포함됨

○ (E3-1 수자원 관련 정책) 수자원 관련 정책을 **GDR-P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- 물 스트레스*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이 수자원 관련 정책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, **해당 사실**을 공시

* 물 스트레스는 단순 물 부족만을 의미하지 않으며, 수량, 수질, 접근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요구됨

○ (E3-2 수자원 관련 조치 및 자원) 수자원 관련 **주요 조치**와 조치 이행을 위해 **배분된 자원**에 대한 정보를 **GDR-A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- 물 스트레스 지역과 관련된 주요 조치 및 자원에 대한 **별도 공시**가 요구됨

□ (지표 및 목표) 2개 공시 요구사항(E3-3, E3-4)이 포함됨

○ (E3-3 수자원 관련 목표) 수자원 관련 목표를 **GDR-T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- 필요시 수자원 관련 목표는 **특정 지리적 영역**(예: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지역)을 기준으로 설정 및 표현되어야 함

○ (E3-4 수자원 관련 지표) 수자원 관련 **기업의 성과**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규정함

- 구체적으로, **자체 영업**에 대해 다음 정보를 **m³ 단위**(또는 배수 단위)로 공시할 것이 요구됨

❶ 총 물 소비량

❷ 물 스트레스 지역에서의 총 물 소비량

- ③ 총 취수량
- ④ 총 방류량
- ⑤ 재활용 및 재사용된 물의 총량
- ⑥ 저장된 물의 총량

- 소비량은 직접 측정, 모델링, 추정, 계산을 통해 산정 가능하며, 계산 시 총 취수량에서 총 방류량을 차감하여 계산 가능

라. ESRS-40a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

□ (목적) ESRS-40a E4(이하, E4)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함

- (하위주제)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변화의 동인, 종의 상태, 육상·담수·해양 생태계의 상태 및 범위, 생태계서비스
- E4 전반에 걸쳐 ‘생물다양성(biodiversity, biological diversity)’은 모든 출처(육상·담수·해양 및 기타 수생 생태계 등)의 생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(variability)을 의미함
- (지역별 맥락 고려) 중요한 임팩트가 특정 지리적 위치와 관련되는 경우, 적절한 수준(예: 사업장, 생태계 등)으로의 통합 및 세분화 고려가 중요함

□ (전략) 1개 공시 요구사항(E4-1)이 포함됨

- (E4-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전환계획) GBF*가 요구하는 전환에 기업이 대응 및 기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

* 쿤밍-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(Kunming-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).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회복으로 전환하며, 2050년까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 달성을 핵심 목표로 제시

- ①GBF가 제시한 ‘생물다양성의 손실 중단 및 회복’에 기여하기 위한 전환계획을 보유하고 있고, ②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(made public)*한 경우, 해당 주요 내용을 공시

* ESRS-40a 보고서 발행 전 또는 발행 시점까지 접근 가능한 공개 채널(홈페이지, 他보고서 등)을 통해 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였음을 의미

□ (임팩트 관리) 2개 공시 요구사항(E4-2, E4-3)이 포함됨

○ **(E4-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정책)**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정책을 **GDR-P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- 추가적으로, 정책이 **추적가능성*1**과 **생물다양성 민감지역*2**을 다루는 방법 설명이 요구됨

*1 가치사슬에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실제 또는 잠재적인 중요한 임팩트를 미치는 제품, 구성품, 원재료의 추적가능성을 지원하는 정책

*2 자체 사업장의 위치가 생물다양성 민감지역 내부 또는 인근(사업장의 영향권 기반)에 있을 경우 관련 정책

- 해당되는 경우, 정책이 **지속가능한 토지 또는 농업 관행, 지속가능한 해양 관행, 산림전용**을 다루는지 명시할 것이 요구됨

○ **(E4-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조치 및 자원)**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**주요 조치**와 조치 이행에 배분한 자원을 **GDR-A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- 조치의 일환으로 **생물다양성 상쇄(biodiversity offset)**를 사용하는 경우, 상쇄에 대한 설명(목적, 면적, 유형, 적용한 품질기준 등)이 요구됨

- 조치 공시 시 **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(Free, Prior and Informed Consent, FPIC)**에 대한 **원주민의 권리 고려**가 요구됨(ESRS-40a S3-2와 연계됨)

□ (지표 및 목표) 2개 공시 요구사항(E4-4, E4-5)이 포함됨

○ **(E4-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목표)**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목표를 **GDR-T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- 목표 설정에 생물다양성 상쇄가 사용되었다면, **사용된 방법** 설명이 요구됨

○ **(E4-5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지표)**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변화 관련 임팩트에 대한 **기업의 성과**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규정함

-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중요한 임팩트와 관련된 지표를 **GDR-M**에 따라 공시할 것이 요구되며, I-2에 따라 중요한 임팩트 설명 시 중요한 임팩트가 ①토지 황폐화, ②사막화, ③토양 밀폐(soil sealing), ④위협받는 종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설명할 것이 요구됨
-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**변화** 관련 중요한 임팩트에 대해 다음 정보를 **추가로** 공시할 것이 요구됨

❶ 중요한 임팩트와 관련된 자체 사업장의 위치*

* 모든 개별 사업장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아니며, 유사한 임팩트를 가진 사업장을 함께 공시할 수 있음

❷ 해당 위치와 관련된 생물다양성 민감지역의 명칭 및 유형

❸ 해당 민감지역에 중요한 부정적 임팩트를 미치는 기업의 활동

마. ESRS-40a E5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

□ (목적) ESRS-40a E5(이하, E5)는 **자원사용 및 순환경제**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함

○ **(하위주제) 자원 유입(inflows),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자원 유출(outflows), 폐기물 관련 자원 유출**

□ (임팩트 관리) 2개 공시 요구사항(E5-1, E5-2)이 포함됨

○ **(E5-1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정책)**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**GDR-P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- 추가적으로, 기업이 **주요 제품(key products)** 및 순환경제 서비스에 순환경제 원칙(circular economy principles) 또는 **에코디자인 요건(eco-design requirements)**을 통합한다면, 그 **방법 설명**이 요구됨

○ **(E5-2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조치 및 자원)**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주요 조치를 **GDR-A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□ (지표 및 목표) 3개 공시 요구사항(E5-3, E5-4, E5-5)이 포함됨

○ **(E5-3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목표)**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목표를 **GDR-T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○ **(E5-4 자원 유입)** 유입된 자원의 **유형 및 순환성(circularity)**을 포함한 자원 유입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함

- 구체적으로, 다음의 정보 공시가 요구됨

❶ 사용한 주요 원료·물질(key materials)

(원료·물질별로 간략한 설명과 원료·물질에 포함된 핵심 원재료 및 전략 원재료* 포함)

* 핵심 원재료 또는 전략 원재료는 「EU Critical Raw Materials Act」의 Annex I-II 제공 목록을 따름

❷ 모든 주요 원료·물질의 총중량

❸ 주요 원료·물질별 중량 또는 총중량 대비 비율

④ 사용한 2차 자원(secondary resources)의 중량 또는 전체 원료·물질 대비 비율

- **(E5-5 자원 유출)** 기업이 순환경제 원칙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설계, 제조 및 제공하고,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**순환경제에 기여하는 방법**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함

- **주요 제품**에 대해, 다음의 정보 공시가 요구됨

- ① 예상 내구성(durability)에 대한 정성적 또는 정략적 정보
- ② 수리가가능한(repairable) 정도에 대한 정성적 또는 정략적 정보
- ③ 주요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가능 비율(designed recyclability rate)

- **자체 영업**에서 발생한 **폐기물**에 대해, 다음의 정보 공시가 요구됨

- ① 폐기물 흐름(waste streams)에 대한 설명
 - ② 발생한 폐기물의 총중량
 - ③ 처분에서 전환된 폐기물 비율
 - ④ 처분된 폐기물 비율
 - ⑤ 최종 처리경로를 알 수 없는 폐기물 비율
- ※ ③ 및 ④는 유해폐기물(hazardous waste)과 비유해폐기물로 세분화 공시

- **방사성폐기물***의 총량에 대한 별도 공시가 요구됨

- * Council Directive 2011/70/Euratom의 정의에 따라, 기체·액체·고체 형태의 방사성 물질로서, 회원국 또는 회원국이 그 결정을 인정한 법인 및 자연인이 추가적인 사용을 예정하거나 고려하지 않고, 회원국의 법률 및 규제 체계에 따라 권한 있는 규제기관이 방사성폐기물로 규제하는 물질로 정의됨

4 | 주제별 기준서 - 사회 (ESRS-40a S1~S4)

가. ESRS-40a S1 자체 사업장 근로자

- (목적) ESRS-40a S1(이하, S1)은 자체 사업장 근로자(own workforce)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함

- **(적용 범위)** 직원(employees) 및 비직원(non-employees) 근로자

구분	설명
직원	기업과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
비직원	기업에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영업 근로자(self-employed people) 또는 인력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인력 등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S1 AR 1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자체 사업장 근로자는 다음으로 한정됨
 - EU 소재 자체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직원 및 비직원
 - EU 이외의 사업장 내 직원 및 비직원 중, EU 시장에 판매 또는 제공되었거나 그럴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관여하는 인력(구매, 마케팅 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포함)
- (ESRS-40a S1 AR 2) S1 내 일부 지표는 인원수(headcount) 또는 전일제환산인원(FTE, Full-time equivalent)*으로 공시할 수 있음

* FTE는 실제 근로시간을 해당 국가의 법률관행상 정규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값이며, 해당 근로자가 **EU용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투입한 시간의 비율을 의미하지 않음**

- **(하위주제)** 근로조건(적정임금, 일·생활 균형 등), 사회적 대화(결사의 자유, 단체교섭 등), 보건 및 안전, 훈련 및 기술개발, 다양성 및 동등대우(성평등, 장애인 고용, 차별 금지 등), 기타 노동 관련 인권(아동노동, 강제노동 등)

□ (임팩트 관리) 3개 공시 요구사항(S1-1, S1-2, S1-3)이 포함됨

- **(S1-1 자체 근로자 관련 정책)** 자체 근로자와 관련된 중요한 임팩트를 관리하는 정책을 **GDR-P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 - 정책이 **전체** 자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또는 **특정 집단**(예: 특정 공장·지역·자영업자 등)을 대상으로 하는지 설명이 요구되며, **인신매매,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, 아동노동을 다루는지** 명시할 것이 요구됨
 - **(S1-2 자체 근로자의 참여, 우려사항 제기 채널 및 구제)** 자체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(workers' representatives)와의 **소통 방법**과 이들의 관점을 실제 및 잠재적 임팩트 관리에 반영하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함
 - **(근로자 참여)** 임팩트에 취약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집단(여성, 이주근로자, 장애인 등)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식과 ^{존재시} **글로벌 기본협정(GFA, Global Framework Agreement)*** 결과를 공시할 것이 요구됨
- *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노동조합 연맹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여,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함
- **(우려사항 제기 채널)** 자체 근로자가 우려사항이나 필요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과 **고충처리 메커니즘(grievance mechanism)** 존재 여부 및 효과성 평가방법 설명이 요구됨

- (구제) 기업이 야기 또는 기여(caused or contributed)한 부정적 임팩트 존재 시, 이를 구제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 및 절차 설명이 요구됨
- (S1-3 자체 근로자관련 조치 및 자원) 자체 근로자 관련 중요한 긍정적 및 부정적 임팩트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 조치와 배분된 자원을 **GDR-A**에 따라 설명할 것을 요구함
- (중요한 부정적 임팩트) 예방, 완화, 종결, 최소화 및 구제를 위한 조치와 조치의 효과를 추적 및 평가하는 방법*을 추가로 설명할 것이 요구됨

* GDR-T 또는 GDR-M에 따라 既 공시된 경우 해당 내용 참조 가능

□ (지표 및 목표) 13개 공시 요구사항(S1-4~S1-16)이 포함됨

- (S1-4 자체 근로자 관련 목표) 자체 근로자 관련 중요한 임팩트를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정성적 및/또는 정량적 목표를 **GDR-T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- (S1-5 기업 직원의 특성) 직원의 규모 및 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

- ❶ 성별로 세분화된 직원 수
- ❷ 직원 수 상위 10개 국가(단, 직원 수 50명 이상)별 직원 수
- ❸ 정규직(permanent) 직원 수 또는 FTE (성별로 세분화)
- ❹ 비정규직(temporary) 직원 수 또는 FTE (성별로 세분화)
- ❺ 근로시간 미보장 직원(non-guaranteed hours employees) 수 또는 FTE
- ❻ 보고기간 중 정규직 직원의 이직률
- ❼ 직원 수와 재무제표에 보고된 가장 대표적인 직원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, 정성적 설명

- (직원의 유형) 복수의 관할권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, **관할권별 법률상 정의**에 따라 정규직, 비정규직, 근로시간 미보장 직원을 분류 및 산정하여 합산함
- (성별 세분화) 법률상 제3의 성별 등록이 가능한 관할권에서는 제3의 성별을 ‘기타’로 분류하여 표시 가능
- (이직률) 이직률은 ①자발적 퇴직, ②해고, ③퇴직 및 은퇴, ④재직 중 사망을 사유로 회사를 떠난 직원 수를 **평균 직원 수**로 나누어 계산함
- (S1-6 비직원의 특성) 기업이 비직원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, 자체 근로자에 포함된 **비직원의 수**(인원수 또는 FTE)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- 단, 본 공시 요구사항은 자체 근로자 중 비직원이 **중요한 임팩트와 연결되는 경우**(예: 비직원이 전체 근로자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, 비직원과 관련된 임팩트가 중요함, 핵심 업무과정에 비직원이 투입됨)에만 적용됨
- (S1-7 단체교섭 적용범위 및 사회적 대화) 직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사회적 대화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규정함
- 구체적으로, 다음의 정보 공시가 요구됨

단체교섭	① 전체 직원 중 단체협약 적용 직원 비율 ② 유의적인 고용이 있는 유럽경제지역(EEA) 국가별로 , 하나 이상의 단체협약 존재 여부 및 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원 비율 ③ EEA 국가 외 지역별 단체협약 적용 직원 비율
사회적 대화 (EEA 국가 한정)	① 유의적인 고용이 있는 국가별 근로자대표 적용 직원 비율 ② 유럽노사협의회(EWC), 유럽주식회사(Societas Europaea, SE) 노사협의회 또는 유럽협동조합(Societas Cooperativa Europaea, SCE) 노사협의회에 의한 대표체계에 관한 협약 존재 여부

- (S1-8 고위경영진 내 성별 다양성) 고위경영진의 성별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, 고위경영진의 **성별 구성을 인원수 및 비율로** 공시할 것을 요구함
- (고위경영진 정의) 행정 및 감독기구보다 **두 단계 하위** 경영진으로 정의됨. 단, 기업의 **자체 정의 사용이 가능**하며 사용한 정의 공시가 요구됨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S1 AR 20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EU 관련 임팩트를 책임지는 경영진으로 공시 범위가 제한됨
 - 예) EU 사업부문 고위경영진, EU 자회사의 고위경영진

- (S1-9 적정 임금) 기업 내 직원이 **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**와 해당 사실을 **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벤치마크**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함
- 구체적으로, 직원들이 적정 임금^{*1}을 받고 있는지, 적정 임금을 판단하는데 사용한 벤치마크^{*2}(벤치마크 출처 국가명 포함)를 공시할 것이 요구됨

*1 기업 직원 중 **최저 임금**을 기준으로 판단함(단, 인턴 및 견습생 제외)

*2 벤치마크는 다음의 임금보다 높은 값을 적용할 것이 요구됨

EU 내	단체교섭을 통해 설정된 임금수준 또는 EU 적정 최저임금 지침에 따라 설정된 법정 최저임금
EU 외	국제노동기구의 생활임금(living wage) 산정 원칙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법률·단체교섭상 적정 최저임금 또는 국제노동기구나 관할권별 기관 등이 산정한 생활임금

- 만약 **모든 직원**이 적정 임금을 받고 있다면, 해당 사실 및 사용한 벤치마크 공시만 요구됨
- **(S1-10 사회적 보호)** 직원들이 중대한 생활 변화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비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지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함
- 종업원이 공적 제도 또는 기업 자체가 제공하는 급여를 통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, 다음의 주요 생애사건이 기존 사회적 보호제도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를 공시할 것이 요구됨

- ❶ 질병
- ❷ 재직 중 실업
- ❸ 업무상 재해 및 후천적 장애
- ❹ 출산휴가

- **(S1-11 장애인)** 직원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포함된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함
-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제한을 전제로, 전체 직원 중 장애인*의 비율을 공시할 것이 요구됨
- * 장애는 각 국가의 법령상 정의에 따라 정의되나, 복수의 국가에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할 수 있음
- **(S1-12 교육 및 기술개발 지표)** 직원의 지속적인 성장, 기술 향상 및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지원을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 및 기술개발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함
- 구체적으로, 다음의 정보 공시가 요구됨

- ❶ 정형화된 성과 및 경력개발 평가*에 참여한 직원 비율
 - * 직원 및 상급자가 인지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 직원이 인지 아래 최소 연 1회 실시되는 평가를 가리킴
- ❷ 직원 1인당 평균 교육시간

- (S1-13 산업안전보건 지표)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용 범위, 품질 및 성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함

- 구체적으로, 다음의 정보 공시가 요구됨

세부 지표	근로자 범위
①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적용률	자체 근로자
②-1 사망자 수 - 기록가능 업무상 사고	자체 근로자 + 사업장 내 그 외 근로자
②-2 사망자 수 - 기록가능 업무상 질병	직원
③ 기록가능 업무상 사고건수 및 사고율	자체 근로자
④ 기록가능 질병 건수	직원
⑤ 근로손실일수	직원

※ 'S1-6 비직원의 특성'이 중요한 정보로 판단된 경우, 비직원의 ②-1 및 ③ 정보를 별도 표시

- (S1-14 일-생활 균형 지표) 직원의 가족 관련 휴가*를 사용할 권리 보유 여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함

* 출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, 육아휴직, 돌봄휴가 포함

- 구체적으로, 보고기간 중 가족 관련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 직원의 비율을 공시할 것이 요구됨

- (S1-15 보수 지표) 직원 내 남녀 간 임금격차, 보수의 불평등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며, 각 지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

- (성별 임금격차) (남성 직원의 시간당 평균 임금-여성 직원의 시간당 평균 임금) ÷ 남성 직원의 시간당 평균 임금 × 100%

- (보수의 불평등 정도) 최고보수 수령자의 연간 총보수 ÷ 최고보수 수령자를 제외한 전체 직원의 연간 총보수의 중앙값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S1 AR 39) 혼합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, 최고보수 수령자는 그룹 전체에서 보수가 가장 높은 인물이 아닌, AR 1에 따라 'S1-5 직원의 특성' 공시범위에 포함되는 직원 중 보수가 가장 높은 인물을 가리킴

- (S1-16 차별 사건 및 기타 인권 사건) 차별 사건 및 기타 인권 관련 사건이 자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함

- 중요하다고 평가된 하위주제별로 다음의 정보 공시가 요구됨

- ❶ 입증된 직장 내 차별 사건 수
- ❷ 자체 근로자와 연관된 기타 인권 사건 수
- ❸ 차별 및 기타 인권 사건과 관련하여 보고기간 중 재무제표에 인식한 벌금, 제재금 및 손해배상금 총액

- 공시 대상 차별 사건 및 인권 사건은 입증(substantiated)*¹ 및 검증(verified)*²된 경우로 제한됨

*1 객관적·사실적·검증 가능한 정보로 사건이 증명된 경우를 의미

*2 법원, OECD 또는 행정당국이 해당 사건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경우를 의미

나. ESRs-40a S2 가치사슬 근로자

□ (목적) ESRs-40a S2(이하, S2)는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함

○ (적용 범위) 상류 및 하류 가치사슬에서 기업으로 인해 중요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

- 예를 들어,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주 급식 및 경비업체 근로자,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하류 가치사슬 기업의 근로자, 기업 제품의 구성품에 사용될 원재료를 제공하는 공급망 근로자 등이 포함됨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S2 문단 8) 혼합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, 가치사슬 근로자는 다음으로 한정됨
 - EU 내 가치사슬 근로자
 - EU 밖의 상류 및 하류 가치사슬 근로자 중, EU 시장에 판매 또는 제공되었거나 그럴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투입물 생산에 관여하는 인력
- (하위주제) 근로조건(적정임금, 일생활 균형 등), 사회적 대화 및 노동권(결사의 자유, 단체교섭 등), 보건 및 안전, 훈련 및 기술개발, 다양성 및 동등대우(성평등, 장애인 고용, 차별 금지 등), 기타 노동 관련 인권(아동노동, 강제노동, 물 및 위생 등)

□ (영향 관리) 3개 공시 요구사항(S2-1, S2-2, S2-3)이 포함됨

○ (S2-1 가치사슬 근로자 관련 정책) 가치사슬 근로자와 관련된 중요한 영향을 관리하는 정책을 GDR-P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- 정책이 전체 자체 가치사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또는 특정 집단(예:

특정 연령대, 공장, 국가 등)을 대상으로 하는지 설명이 요구되며, 인신매매,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, 아동노동을 다루는지 명시할 것이 요구됨

- 또한, 공급사 행동규범(supplier code of conduct) 보유 여부 공시를 요구함
- (S2-2 가치사슬 근로자의 참여, 우려사항 제기 채널 및 구제) 가치사슬 근로자와의 소통 방법과 우려사항이나 필요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, 구제 접근방법을 설명할 것을 요구함
- (근로자 참여) 임팩트에 취약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집단(여성, 이주근로자, 장애인 등)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식과 ^{존재시}글로벌 기본협정(GFA, Global Framework Agreement) 결과를 공시할 것이 요구됨
- (우려사항 제기 채널) 가치사슬 근로자가 우려사항이나 필요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과 고충처리 메커니즘(grievance mechanism) 존재 여부 및 효과성 평가방법 설명이 요구됨
- (구제) 기업이 야기 또는 기여(caused or contributed)한 부정적 임팩트 존재 시, 이를 구제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 및 절차 설명이 요구됨
- (S2-3 가치사슬 근로자 관련 조치 및 자원) 가치사슬 근로자 관련 중요한 긍정적 및 부정적 임팩트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 조치와 배분된 자원을 GDR-A에 따라 설명할 것을 요구함
- (중요한 부정적 임팩트) 예방, 완화, 종결, 최소화 및 구제를 위한 조치와 조치의 효과를 추적 및 평가하는 방법을 추가로 설명할 것이 요구됨
- (인권 사건) 중요하다고 평가된 하위주제별로, 보고기간 중 확인된 가치사슬 근로자 관련 인권 사건*을 공시할 것이 요구됨
- * 개별 인권 사건을 모두 나열할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, 사건의 유형이나 영향을 받은 근로자 집단별로 집계할 수 있음

□ (지표 및 목표) 1개 공시 요구사항(S2-4)이 포함됨

- (S2-4 가치사슬 근로자 관련 목표) 가치사슬 근로자와 관련된 정성적 및/또는 정량적 목표를 GDR-T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다. ESRS-40a S3 영향받는 지역사회

□ (목적) ESRS-40a S3(이하, S3)은 영향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함

- (하위주제) 지역사회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(토지 관련 임팩트, 안보 관련 임팩트, 물 및 위생 등), 지역사회의 시민적·정치적 권리(표현의 자유, 집회의 자유 등), 원주민의 권리(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등)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S3 문단 7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자체 영업 또는 상하류 가치사슬을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는 다음과 같음
 - EU에 위치한 영향받는 지역사회
 - EU 밖에 위치하지만, EU 시장에 판매 또는 제공되었거나 그럴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**생산에 관여하는 기업**의 자체 영업 또는 가치사슬 행위자에 의해 영향받는 지역사회

□ (임팩트 관리) 3개 공시 요구사항(S3-1, S3-2, S3-3)이 포함됨

- (S3-1 영향받는 지역사회 관련 정책) 영향받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중요한 임팩트를 관리하는 정책을 **GDR-P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 - 정책이 포괄하는 지역사회 범위(모든 지역사회 또는 특정 지역사회(예: 원주민 공동체 또는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)) 공시가 요구됨
 - 또한, 원주민에 대한 임팩트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특정 정책 조항(policy provisions) 존재 시 공시가 요구됨
- (S3-2 지역사회 참여, 우려사항 제기 채널 및 구제) 영향받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방법과 우려사항이나 필요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, 구제 접근방법을 설명할 것을 요구함
 - (지역사회 참여) 구체적으로 다음 정보에 대한 공시가 요구됨

- ❶ 영향받는 지역사회, 정당한 대표자(legitimate representatives)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리자(credible proxies)와 직접 참여 여부 및 참여 방법
- ❷ 지역사회의 관점이 보고연도 중 실제·잠재적 임팩트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반영되는 방법
- ❸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(예: 여성, 여자아동, 이주민, 장애인)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, 그러한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

※ 영향받는 지역사회가 원주민인 경우, 다음을 추가 공시

- ❶ 이해관계자 참여 접근법에서 원주민의 특별한 권리를 고려 및 존중하는 방법과
- ❷ 원주민의 참여 방식 및 조건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의 협의 여부 및 방법

- (우려사항 제기 채널) 영향받는 지역사회가 우려사항이나 필요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과 고충처리 메커니즘(grievance mechanism) 존재 여부 및 효과성 평가방법 설명이 요구됨
- (구제) 기업이 야기 또는 기여(caused or contributed)한 부정적 임팩트 존재 시, 이를 구제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 및 절차 설명이 요구됨
- (S3-3 영향받는 지역사회 관련 조치 및 자원) 영향받는 지역사회 관련 중요한 긍정적 및 부정적 임팩트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 조치와 배분된 자원을 **GDR-A**에 따라 설명할 것을 요구함
- (중요한 부정적 임팩트) 예방, 완화, 종결, 최소화 및 구제를 위한 조치와 조치의 효과를 추적 및 평가하는 방법을 추가로 설명할 것이 요구됨
- (인권 사건) 중요하다고 평가된 하위주제별로, 보고기간 중 확인된 영향받는 지역사회 관련 인권 사건*을 공시할 것이 요구됨
- * 개별 인권 사건을 모두 나열할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, 사건의 유형이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별로 집계할 수 있음. 또한, 인권 사건 판단 시 토지권(land rights) 및 원주민의 FPIC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고려할 것이 요구됨

□ (지표 및 목표) 1개 공시 요구사항(S3-4)이 포함됨

- (S3-4 영향받는 지역사회 관련 목표) 영향받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성적 및/또는 정량적 목표를 **GDR-T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라. ESRs-40a S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

□ (목적) ESRs-40a S4(이하, S4)는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함

- (하위주제) 정보 관련 임팩트(사생활 보호, 정보 접근 등), 소비자 안전(아동 보호, 신체의 안전 등), 사회적 포용(책임 있는 마케팅 관행, 차별 금지 등)
-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의 오용 또는 불법적 사용으로 인한 임팩트는 S4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S4 문단 7) 혼합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,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는 다음으로 구성됨
 - EU 시장에 판매 또는 제공되었거나 그럴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

- 기업이 EU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

□ (임팩트 관리) 3개 공시 요구사항(S4-1, S4-2, S4-3)이 포함됨

- (S4-1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관련 정책)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와 관련된 중요한 임팩트를 관리하는 정책을 **GDR-P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 - 정책이 포괄하는 범위(모든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또는 특정 집단(예: 특정 연령대의 소비자)) 공시가 요구됨
- (S4-2 소비자 참여, 우려사항 제기 채널 및 구제)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와의 소통 방법과 우려사항이나 필요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, 구제 접근방법을 설명할 것을 요구함
 - (소비자 참여) 구체적으로 다음 정보에 대한 공시가 요구됨

- ①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, 정당한 대표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리자와 직접 참여하는 방법(예: 정보 제공 세션, 협의 등)
- ②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의 관점이 보고연도 중 실제 및 잠재적 임팩트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 및 활동에 반영되는 방법
- ③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(예: 장애인, 아동)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, 그러한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

- (우려사항 제기 채널) 영향받는 지역사회가 우려사항이나 필요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과 고충처리 메커니즘 존재 여부 및 **효과성 평가방법** 설명이 요구됨
- (구제) 기업이 야기 또는 기여한 부정적 임팩트 존재 시, 이를 구제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 및 절차 설명이 요구됨
- (S4-3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관련 조치 및 자원)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관련 중요한 긍정적 및 부정적 임팩트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 조치와 배분된 자원을 **GDR-A**에 따라 설명할 것을 요구함
 - (중요한 부정적 임팩트) 예방, 완화, 종결, 최소화 및 구제를 위한 조치(마케팅, 판매 및 데이터 이용 관행 등 타 사업상 압력과 긴장이 발생하는 경우의 접근법 포함)와 조치의 효과를 추적 및 평가하는 방법을 추가로 설명할 것이 요구됨
 - (인권 사건) 중요하다고 평가된 하위주제별로, 보고기간 중 확인된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관련 인권 사건*을 공시할 것이 요구됨

- * 개별 인권 사건을 모두 나열할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, 사건의 유형이나 영향을 받은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별로 집계할 수 있음

□ (지표 및 목표) 1개 공시 요구사항(S4-4)이 포함됨

- (S4-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관련 목표)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와 관련된 정성적 및/또는 정량적 목표를 **GDR-T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5

주제별 기준서 - 거버넌스 (ESRS-40a G1)

가. ESRS-40a G1 사업행위

□ (목적) ESRS-40a G1(이하, G1)은 사업행위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함

- (하위주제) 기업문화(반부패 및 뇌물방지, 내부고발자 보호, 동물복지 등), 공급업체 관계 관리(지급관행 등), 정치적 영향력(로비 활동)

□ (임팩트 관리) 3개 공시 요구사항(S4-1, S4-2, S4-3)이 포함됨

- (G1-1 사업행위 관련 정책) 사업행위 관련 정책을 **GDR-P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- GDR-P에 추가로 다음 정보에 대한 공시가 요구됨

- ❶ UN 부패방지협약과 일관된 반부패 및 뇌물방지 정책 보유 여부
- ❷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 보유 여부
- ❸ 부패 또는 뇌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기업 내 기능 또는 역할(예: 고위험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능, 공공기관 및 정부와 상호작용하는 기능)

- (G1-2 사업행위 관련 조치) 사업행위 관련 조치를 **GDR-A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
- GDR-A에 추가로 다음 정보에 대한 공시가 요구됨

- ❶ 공급업체 관계 관리
 - 공급업체 선정 시 지속가능성 성과 고려 시 고려하는 방법
 - 구매조직에 지속가능성 교육 제공 시 그 내용
 -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 성과 개선을 위한 공급업체 참여 내용
- ❷ 부패 및 뇌물 관련 혐의 또는 사건을 예방, 탐지, 조사, 대응하는 절차
 - 부패 및 뇌물 위험이 가장 높은 기능 및 역할(경영 및 감독기구 구성원 포함)에

제공되는 반부패 및 뇌물방지 교육

- 반부패 및 뇌물방지 절차 및 기준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

③ 부패 또는 뇌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기업 내 기능 또는 역할(예: 고위험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능, 공공기관 및 정부와 상호작용하는 기능)

□ (지표 및 목표) 4개 공시 요구사항(G1-3, G1-4, G1-5, G1-6)이 포함됨

- **(G1-3 사업행위 관련 목표)** 사업행위와 관련된 목표를 **GDR-T**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
- **(G1-4 부패 또는 뇌물수수 관련 지표)** 보고기간 중 부패 또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유죄판결(convictions), 제재(sanctions), 벌금(fines) 및 관련 결과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규정함
 - 구체적으로, 보고기간 동안 부패 방지 및 뇌물 방지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죄 판결 및 제재 건수와 벌금 총액 공시가 요구됨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G1 AR 7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유죄판결 및 제재 건수와 벌금 총액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함
 - EU 또는 EU 회원국 당국이 기업 내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하여 부과한 것
 - EU 밖의 국경 간 사건(cross-border cases) 중 EU 소재 법인 또는 자연인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
- **(G1-5 로비 활동을 포함한 정치적 영향력 지표)** 정치적 기부 및 로비 활동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활동 및 약속(commitments)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규정함
 - 구체적으로, 보고기간 동안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금전 및 현물 정치적 기부 총금액(필요시 국가 및 지리적 지역별, 수령인 및 수혜자 유형별 세분화 포함) 공시가 요구됨
 - 또한, 로비 활동의 주요 쟁점(main issues), 기업이 취한 주요 입장, 로비 활동이 기업의 중요한 임팩트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공시가 요구됨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G1 AR 11) **혼합 접근법**을 적용하는 경우, 정치적 영향력 및 로비 활동은 다음을 집계함
 - EU 자회사 또는 지점이 수행하였거나, 그 밖에 기업의 EU 내 활동과 연결된 활동
 - EU 시장에 판매 또는 제공되었거나 그럴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(활동의 장소 및 방식 불문)

- 보고기간 중 행정·경영·감독기구에 선임된 인물 중, 직전 2년 동안 공공행정기관(규제기관 포함)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(comparable position)*를 맡았던 인물에 관한 정보 공시도 요구됨

* 이에 상응하는 지위 판단 시, 책임 수준(level of responsibility) 및 수행 활동의 범위(scope of activities)를 고려함

- (G1-6 지불 관행 지표) 기업의 표준 지급조건(standard payment terms) 및 지급 성과, 특히 중소기업(SMEs)에 대한 지급지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규정함

- 구체적으로 다음 정보에 대한 공시가 요구됨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❶ 일수(number of days)로 표시된 주요 공급업체 유형별 표준 지급조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에 다른 조건 적용 시, 별도로 공시 ❷ 표준 지급조건에 부합한 지급한 금액의 비율 ❸ 지급지연과 관련하여 현재 계류 중인 법적 절차의 건수 |
|---|

[ESRS-40a 특유 고려사항]

- (ESRS-40a G1 AR 13) 혼합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, 공시정보는 다음을 대상으로 함
 - EU 관할지역 내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표준 지급조건
 - EU 관할지역 내 공급업체에 대한 지연지급 및 관련 법적 절차 건수

- 만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지연이 중요한 주제로 식별되는 경우, G1에서 규정하지 않는 기업특유 지표 제공이 요구됨

붙임 1

ESRS(2026년) 대비 제거된 주요 공시 요구사항

- **쏘** 기준서(12개)에 걸쳐 **위험 및 기회** 표현 및 관련 공시 요구사항 제거에 추가로, 기준서별로 다음 사항이 유의적으로 조정됨

가. ESRS-40a 1 일반 요구사항

- **가치사슬 상한(value chain cap)** 제거

- 가치사슬 내 보호대상 기업*에 요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거함

* 직전 회계연도 평균 종업원 수가 1,000명 이하인 가치사슬 내 기업

- **택소노미(Taxonomy)** 정보 포함 의무 제거

- EU 택소노미 규정 제8조(Regulation EU 2020/852 Art. 8)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제거함

나. ESRS-40a 2 일반 공시

- ① (전략) 재무적 영향, 회복력 평가 제거

- (SBM-3) 위험 및 기회 관련 내용, 재무적 영향, 회복력 평가 관련 공시 요구사항(아래 표 참조)을 제거함

ESRS 2 문단	공시 요구사항
24	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
25	위험 및 기회의 현재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정보
26	다음 회계연도에 관련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정보
27	위험 및 기회의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정보
33	전략 및 사업모형의 회복력에 대한 정성적 정보

- ② (임팩트 관리) 공시 요구사항 명칭 변경(IRO → I) 및 위험·기회·의존성 관련 요소 제거

- (I-1·2) 위험 및 기회의 식별, 중요성 평가, 이해에 필요한 의존성 관련

공시 요구사항(아래 표 참조)을 제거함

ESRS 2	공시 요구사항
AR 23	중요한 위험 및 기회 식별 및 평가에 포함되는 의존성에 대한 정보
AR 27	중요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에 포함되는 의존성에 대한 정보

다. ESRS-40a E1 기후변화

① (DR 제거)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만을 포괄하는 공시 요구사항(3개) 제거

○ (E1-2) 기후 관련 위험 및 시나리오 분석

ESRS E1 문단	공시 요구사항
15	물리적 위험, 전환 위험으로 세분화된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
16	기후 관련 위험 요인과 전환 사건 및 추세에 대한 자산 및 사업활동의 익스포저 및 민감도 평가 방법론
17	시나리오 분석 사용 시 관련 정보

○ (E1-3) 기후변화 관련 회복력

ESRS E1 문단	공시 요구사항
19	- 기후 회복력 평가 결과 - 회복력 평가의 주요 불확실성 - 전략 및 사업모형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

○ (E1-11) 예상 재무적 영향

ESRS E1 문단	공시 요구사항
40	중요한 물리적 위험과 관련된 다음의 정보 - 물리적 위험에 노출(적응 조치 고려 전)된 자산의 장부금액 - 적응 조치로 대응된 자산의 장부금액 비율 -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 사업활동의 순매출
41	중요한 전환 위험과 관련된 다음의 정보 - 전환 위험에 노출된 자산의 장부금액 및 예상 좌초자산 - 완화 조치로 대응된 자산의 장부금액 비율 - 담보 부동산의 에너지효율 등급 - 미래에 재무제표에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전환 관련 잠재부채 - 전환 위험에 노출된 순매출 및 화석연료 고객 관련 순매출
43	기후 관련 기회와 연결된 자산 또는 매출 금액

② (주요 용어 변경) 위험 관련 표현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음 용어들의
표현 또는 설명 변경

- (기후 완화 목적) '전환 위험' → '저탄소 경제 전환의 임팩트'
- (기후 적응 목적) '물리적 기후 위험', '전환 위험' 삭제 → '(잠재적 부정적) 임팩트'로 대체
- (E3과의 연계) '(물로 인한) 물리적 위험' → '위해 요인 및 임팩트'
- (E1-9, GHG 제거) '(비영구성) 위험' → '불확실성'